



차 의과학대학교  
CHA UNIVERSITY



2021학년도

#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(안)



※ ※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내용 심의결과 및 승인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등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었으니 원서접수 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(<http://admission.cha.ac.kr>)에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I. 전형일정 및 모집인원

### 1. 전형일정

구분	일정
원서교부 및 접수	2020.7.20.(월) ~ 7.24.(금) (마감일은 17:00까지)
서류제출	2020.7.20.(월) ~ 7.27.(월)
구술면접	2020.8.22.(토)
최종 합격자 발표	2020.9.10.(목)
합격자 등록(예치금 납부)	2020.12.28.(월) ~ 12.30.(수)
추가합격자 발표	2020.12.31.(목) ~ 2021.1.4.(월) 21:00까지
추가합격자 등록	2021.1.5.(화)까지
등록금 납부	2021.2.8.(월) ~ 2.10.(수)

### 2. 모집인원

계열	모집단위	모집인원	
		인원제한(정원내 2%)	인원비제한
자연	간호학과	7명	00명
	의생명과학과		
	바이오공학과		
	식품생명공학과		
	스포츠의학과		
인문	AI보건의료학부	7명	00명
	데이터경영학과		
	의료홍보미디어학과		
	미술치료학과		
	상담심리학과		

※ 대학 구조개혁 및 학과 개편에 따라, 모집단위는 변경될 수 있음

※ 인원제한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

## II.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

### 1.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

모집단위	전형요소 활용			선발모형
	서류평가	구술면접	총점	
간호학과	30(30%)	70(70%)	100(100%)	일괄합산
의생명과학과				
바이오공학과				
식품생명공학과				
스포츠의학과				
AI보건의료학부				
데이터경영학과				
의료홍보미디어학과				
미술치료학과				
상담심리학과				

### 2. 서류평가

평가 활용 자료	평가기준	평가방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학교생활기록부 및 성적증명서</li> <li>· 자기소개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공에 대한 적성 및 학업역량</li> <li>· 발전가능성</li> <li>· 한국어 능력</li> <li>· 인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정성평가</li> </ul>

### 3. 구술면접

평가 활용 자료	평가기준	면접방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학교생활기록부 및 성적증명서</li> <li>· 자기소개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공에 대한 적성 및 학업역량</li> <li>· 발전가능성</li> <li>· 한국어 능력</li> <li>· 인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구술면접</li> </ul>

### III. 지원자격기준

#### 1. 지원자격

- 우리나라 학제(12년)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중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

구분	법령구분	지원자격		
인원 제한	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	해외근무/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※ 학생 및 부모 모두가 아래의 '2.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' 중 '가. 재외국민 및 외국인(2% 이내)'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※ 지원자격 구분과 관련없이, 해외근무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		
인원 비제한	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	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※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(복수국적자 제외)	어학 기준	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
		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		

#### 2.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

##### 가. 재외국민 및 외국인(2% 이내)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)

- 1) 해외근무자
  -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해외근무/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
- 2) 해외근무자의 자녀
  -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/사업/영업하는 기간 동안,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(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)을 포함하여 중·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
- 3) 해외재학기간
  -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
    - :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 단,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
  -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
    - :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
- 4) 해외체류일수 조건
  -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
    - :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해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
  -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
    - :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
  - 체류일정 산정 시, 소수점 절사

### III. 지원자격기준

#### 2.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

구분	내용
학생 이수기간	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 중·고교 과정 3년 이상
체류기간	학생 : 학생 이수 기간의 3/4 이상 부모 : 학생 이수 기간의 2/3 이상
해외근무자 재직기간	역년으로 통상 3년(1,095일) 이상의 해외근무/사업/영업

#### 나. 전 교육과정 이수자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29조제2항제7호)

- 1) 국내 초·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·중·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
  -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,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
  -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,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
- 2)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학년제	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	비고
10학년 이하	미인정	단,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*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
11학년제	초·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	
12학년제	※ 단,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·중등과정을 이수하여야 함	
13학년 이상	10학년~12학년 또는 11학년~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	

\*부족한 학교 교육과정: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

- 단,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·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·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(6개월)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